

행정자치부

훈계요구

제 목 승진업무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경기도

관 계 기 관 성남시

관련 대상자 ① ○○○○○○○○○ ○○○○○○ (전 ○○○○○○) 지방○○○○ ○○○

② ○○○○ ○○○○ (전 ○○○○○○)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2. 5. 2.부터 2015. 4. 30.까지, 지방○○○○ ○○○은 2015. 5. 1.부터 2016. 5. 1.까지 성남시 ○○○○○○에 근무하면서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이다.

「지방공무원법」 제26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며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의 경우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에 따르면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

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성남시에서는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위 직급으로 승진예정에 따른 결원(5급 승진 의결자 수)을 예측하여 승진 심사제도를 운용하였다.

그 결과, 2015. 7. 18.자 승진임용시 지방○○○○○○의 경우, 결원이 1명(승진예정인원 2명)으로 지방○○○○○○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4번까지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해야 함에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6번인 ○○○를 지방○○○○○○로 승진 임용하였고

지방○○○○의 경우 결원이 2명(승진예정인원 7명)으로 지방○○○○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8번까지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해야 함에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12번인 ○○○를 지방○○○○로 승진 임용하였다

또한, ○○○ 지방○○○○ 승진심사의결의 경우 실질적인 심사의결 날짜가 2014. 6. 24.자로 그 당시 지방○○○○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9순위로서 사실상 2명의 지방○○○○ 승진심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 직위가 공석일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자체적으로 종합 검토하여 승진심사에 포함시켜 심사의결 후 2014. 7. 1.자로 지방○○○○으로 승진 임용하여 ○○○○○○○으로 인사 발령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제65조의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중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

휴직·파견자의 복귀시와 파면·해임·면직자의 복귀시, 1년 이상의 국외 파견 근무 및 고용휴직에 따른 2주 이내의 업무인수인계 기간, 1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장기국외훈련을 위한 2개월 이내의 파견 준비기간, 직제의 신설·개폐 등에 따른 2개월 이내의 기관신설 등 준비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38조의5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8조, 제39조 및 이 영 제30조, 제38조, 제38조의3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승진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성남시에서는 지방○○으로의 승진심사를 추진하면서 주요사업 추진지연의 업무공백 사전예방,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 직위가 갖는 조직 내 위상과 소관 부서의 조직 관리 필요성,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2개월간의 퇴직준비 휴가를 부여하면서

관련 법령이 규정한 사유가 아니면 소속 공무원을 대기발령 시킬 수 없고 적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퇴직준비 휴가자 6명에 대하여 법령을 위배하면서 자치행정과로 대기발령조치하고 이러한 대기발령조치의 결원을 보충한다는 명분으로 직위결원 보충을 위해 관할 인사위원회 승진심의·의결을 거쳐 직무대리를 선발함에 따라 지방○○으로의 승진의 경우에 있어서 적법한 인사시기보다 1~2개월 이상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심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남시장은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수를
과다 산정하여 승진예정자로 의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